

주요 국정홍보 ①(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끝까지 추적)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수면 위로 드러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모두 힘을 모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 »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 동안
2주간 누적 325건 접수
- » 4건 경찰 수사의뢰 및 24건 공정위 조사요청,
학원법령 위반 제재 처분
- » 교육부 신고센터 지속 운영 및 관계 부처 신고 접수 체계 강화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 방법

-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총괄) 신고 접수 → clean-hakwon.moe.go.kr
- 공정거래위원회 사교육 관련 부당광고 신고 접수 → [공정위 홈페이지](#) 내 민원참여
- 경찰청 신고 접수 → [경찰청 홈페이지](#) 내 경찰민원포털

주요 국정홍보 ㉔(새마을금고 예적금 안전하게 보호)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새마을금고 맡기신 예적금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 인수합병 시 고객 예적금 100% 이전·보호 및 피해 전혀 없음
- 77.3조원의 안정적인 현금성 자산 보유

☑ 새마을금고법에 근거한 예금자보호제도

-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돼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
- 일부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어도, 인건 금고와 인수합병을 통해 새마을금고를 우량화, 고객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조치
- 금융기관별 관련 법률에 따라 예금자보호제도(법 금융기관보다 앞서 도입)를 운영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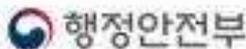
☑ 한층 더 보장되는 상환준비금제도

- 예금자보호제도 외에도 고객의 예적금에 대한 지급보호를 위해 상환준비금제도를 운용 중. 현재 상환준비금은 약 13조 3,611억원으로 고객의 예금지급에 대비하고 있으며, 더욱 안정적인 예금 지급 보장을 위해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 추진 중.

☑ 안정적인 현금성 자산 보유

- 고객 요구시 언제든지 예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현재 금고 예적금 대비 30%인 약 77.3조원의 현금성 자산 보유하고 있어 지급 여력 충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갈사는 안전한 나라



새마을금고, MG새마을저축은행

중도해지한 예적금 재예치하면 비과세, 만기이자 복원됩니다

- ☑ 중도해지로 발생한 고객의 이자 손실 100% 복원
- ☑ 7.1.(토) ~ 7.6.(목) 중도해지 예적금*에 한하여,
7.14.(금)까지 재예치 신청한 고객 *저축성(거치식, 적립식) 상품

-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예적금* 중도해지로 인한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도 해지된 예적금의 재예치를 추진합니다. *저축성(거치식, 적립식) 상품
- 대상은 '23.7.1.(토).0시부터 7.6.(목).24시까지 기간 중 중도 해지한 예-적금으로 신청기간은 '23.7.14.(금)까지입니다. 이 기간 중 재예치를 신청하면 최초 가입 조건과 동일한 요건(적용이율, 비과세 등)으로 계좌가 복원됩니다.
- 예금주는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계좌** '23.7.1.(토). 0시부터 '23.7.6.(목). 24시까지 중도해지 저축성(거치식, 적립식) 상품
- 신청기간** 중도 해지 이후 '23. 7. 14.(금)까지
- 신청방법** 중도 해지한 계좌 개설금고 창구(가까운 새마을금고에 방문 신청)
- 처리방법** 중도 해지 취소 신청서 접수 후 계좌 개설금고에서 원래대로 복원
- 적용요건** 최초 계좌와 동일한 요건(적용 이율, 만기 금액, 비과세* 등)으로 적용
※ 비대면 계좌 해제 시 전국 모든 새마을금고 창구에서 신청 가능



MC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 은행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하여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새마을금고는 원금과 이자 보장이 확실합니다.”

- ☑ 다른 금융기관과 같이 예금자별 5천만원 이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 ☑ 일부 금고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되며 예적금이 5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도 **원금과 이자가 지급**됩니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새마을금고의 안전성, 지급여력은 충분합니다.”

- ☑ '23년 5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황준비금 총 77.3조원 보유 예금자보호준비금도 2.6조원 준비되어 있습니다.
- ☑ 중앙회 대출(금고별 1천억원), 금고 간 거래(자금 이체) 등을 통해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며 필요시 국가, 공공기관, 여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통한 지급도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당국과 연계를 통해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 행정안전부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금융 당국과 수시로 관리, 감독을 논의하며 새마을금고 건전성 규제에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감독 당국도 새마을금고의 연체채권 정리를 위해 새마을금고가 매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새마을금고를 안심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금고 건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주요 국정홍보 ㉓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The image shows a spiral-bound notebook with a blue cover. The page is white and features a blue header bar at the top with the text "OJ 700 8000" in yellow. Below the header, there is a title "OJ 700 8000" in blue. To the left of the title is a red apple, and to the right is a photograph of two people. Below the title, there is a blue sidebar with three buttons: "HOME", "ABOUT", and "CONTACT". To the right of the sidebar, there are three text blocks, each with a blue heading and a paragraph of text.

OJ 700 8000

OJ 700 8000

HOME

ABOUT

CONTACT

Introduction

This is the first page of the document. It contains the title and the first paragraph of text.

Conclusion

This is the second page of the document. It contains the title and the second paragraph of text.

Summary

This is the third page of the document. It contains the title and the third paragraph of text.



주요 국정홍보 ④ [청년과 함께하는 노동개혁]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청년과 함께
바로서는 대한민국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하고 상식이 바로서는
노동시장을 만들어주세요.



청년A



청년B

청년이 존중받고 보호받는
노사법치주의 원칙을
바로세워 주세요.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청년C



청년D

선심성 현금지원보다는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경험을 쌓게 해주세요.

청년과 함께
바로서는 대한민국

노동개혁은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입니다

노동약자와 청년의 권익을 대변하는
합리적 노동운동은 보장하되,
이념화·기득권화되어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을 가로막는 행태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노동약자, 청년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다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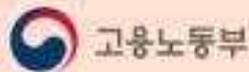
-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청년과 함께
바로서는 대한민국

노동시장에 내딛는 청년의 첫걸음에
불공정이 없도록,
공정채용법 입법을 지원해

채용에서의
반칙과 특권을 뿌리뽑겠습니다



주요 국정홍보 ⑥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경제활력 제고

수출·투자 촉진,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내수 활성화 등 적극 지원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거시경제 여건을 종합 고려하여 신속적 정책운용

· 15조원+α 추가자원 발굴

(중앙정부·내수기업 재투자, 한시특례 연방 등
평균 기간 100% 집행유예) 15조원
(정책금융) 총규모 242조원 확대

· 금융·외환시장 안정 유도



국고채
발행 축소



정기채
발행 확대



해외자금
유입 촉진



● 하반기 회복 모멘텀 강화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 지속



수출

· 무역금융 184조원 공급

· 중소·다변화 수출기업 지원 강화

공공지원
수출·투자 지원

투자



26조원 규모
시설투자
자금 공급



투자인센티브
확대 및
기업승계
세 부담 완화



예산
활성화 3법
개정 추진

경제활력 제고

수출·투자 촉진,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내수 활성화 등 적극 지원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지역경제활력제고 3대 패키지 지원 추진



1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
▼
일부처 TF 가동

2 기회발전 특구
▼
이전 창업기업
세제지원
규제혁신
보조금 상향 등

3 지역산업 활성화
▼
신산업 서비스의
양주 지원
민간지원 확대

◎ 대규모 이벤트 개최 및 국내방한 관광 활성화 지원

• 동행축제(9월), K-POP 콘서트(8~9월), 코세페(11월) 등 연달아 개최



공유숙박
일주일 2회 허용
지역 확대
(연산 뒤)

KTX-SRT
할인제물

"한국인"
택시 호출 및
결제 편의 제고

내수활성화

11월 11일



● 물가안정 기조인착 및 생계비 부담 경감

- 공공요금 하반기 중 인상 최대한 자제(국민 부담 최소화)
- 핵심 생계비 경감 지원



에너지요금
취사책 확대



건강보험료 인상
최소화 검토



사고육비
담보 방안 추진

* ①장교에 한정해 수급 범위 ②사교육비 커리큘럼 검토
③공교육 고교 교육 강화 등

● 임대차 시장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



보증금 차액 반환목적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출대출, 무이자대출 지원



부동산
세부담 완화 지속



주택구입 전세자금 저리 대출
23조원 추가 공급



확장된 일자리



일자리 확충

◎ 현장·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 제2차 빈일자리 대책 마련-지원업종* 확대

*건설업, 수산업, 폐업업, 지원·취업의 주가

· 내일배움카드 특화훈련 확충



청년 일경험
사업 확대
('23년 8만명*까지)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
(단기·예무 군감부까지)

◎ 약자복지 집중투자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저소득층

반지하 침수방지 시설
설치비용 전액 지원

장애인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비율 상향
(국가공급기관)

노인
아동

노인돌봄 전문인력
교육과정 확대
단계적 보육료 인상

소상공인

새종별 가맹 활동 등
영세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약자복지 취약계층

경제체질 개선

과학기술·첨단산업 육성, 구조개혁·규제혁신, 공정·성능 혁신에 역점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R&D 혁신 및 성과 제고 인재양성 등에 주력



R&D

- 글로벌 협력
- 나뉘먹가시 관행 효과 등 자원 방식 개편



인재양성

- 항공·우주·첨단부품 인재양성
-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 여건 개선



첨단산업

- 15개 국가첨단산업벨트 여타 신속 처리
- 10조원+ 금융 지원



과학기술·첨단산업



◎ 근본적 체질개선 위한 노동·교육·연금개혁 추진

- 노동** 노조 업무방해, 사용자 포괄임금 오남용 등 불법 부당행위 엄단
- 교육** 고등 평생교육 특별회계 확대(現 9.7조원)
- 연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23.10월),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검토

경제체질 개선

고위기술·첨단산업 육성, 구조개혁·규제혁신, 공정·상생 촉진에 역점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현장 중심 규제혁신 및 서비스 금융 공공혁신 가속화



규제

시장영역·지방사업
산업단지 등소벤처
4+7(리)개 분야 규제 집중 개선



금융

정책금융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

IDEA

경제규제혁신



서비스 혁신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수립
문화·서비스산업 육성
(콘텐츠·컨텐츠)



공공

건전재정 기초 안착
공공기관 자원 데이터 개방 확대



공정·상생

◎ 불법·부당행위를 엄단하고 상생협력 촉진



공정 강화

중관·가성자산
사금융
불법행위 차단,
보조금 관리 강화 등



경쟁 활성화

은행·
통신업 등
신규사업자
확대



상생협력

남중대금
연동제
안착 위한
계도기관 운영
(04-12.31일)



경제교육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구축 등
교육 인프라
확충

미래 대비 기반 확충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위기, 기후위기,
경제안정 이슈 등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전방위적 대응 강화


인구위기 극복
방부처 분야별
대응방안 마련


이민정책
비자제도
개편 추진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험 사업 추진


실버타운
활성화



저출산 고령화



◎ 경제 외교 강화 및 공급망 대응체계 확충



공급망 3법 제정 및 후속조치 추진하고,
'고리스크 품목 중심으로 컨틴전시 플랜' 마련

조기경보시스템 도입(중대) → 품목별 추가 및
공급망건도 고도화(중대) 품목 등 추가 추진
핵심장비 선적 확대·수입선 다변화(중대) 생산기지
구축 지원 강화

◎ 과학과 합리에 기반한 위기대응 역량 강화



중소기업 에너지 절감
핵심설비 지원 확대
(300~500대)



소형공인
노후 냉방기 교체
(1.9만대)



탄소중립
포인트제 확대

주요 국정홍보 ⑥ (TV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납부)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방송통신위원회

TV 수신료 7월 12일부터 전기요금과 분리 납부

**TV 없는 세대는 수신료를 안 낼 권리가 강화되고
수신료 미납만으로 단전되는 부작용이 차단됩니다.**

발행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수신료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수신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납부할 2,900원(IVA포함)이고 KCC가 EBS와 체결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전력공사가代收할수하고 있음

기존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 고지·징수**

-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려워 TV가 없어도 수신료를 내는 경우가 있었음
-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납부하는 것도 불가능
- 수신료를 미납하는 경우 전기료 미납으로 권주됨에 단전 우려가 있었음

개선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 고지·징수**

-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알 수 있고, 수신료가 잘못 부과된 경우 바로 대처 가능
- TV가 없는 세대는 수신료를 안 낼 권리가 강화됨
- 수신료 미납만으로 단전되는 부작용 차단

Q1 수신료 분리징수는 왜 하나요?

'94년부터 약 30년 동안 국민들께 불편을 드린 점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변화 요구에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은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합산 고지되고, 이에 따라 합산된 금액을 납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려워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수신료가 따로 고지되고 따로 납부할 수 있어,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알 수 있고, 잘못 부과된 경우 바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Q2 분리 납부는 국민에게 어떤 장점이 있나요?

수신료와 전기요금이 따로 고지 징수되면, TV가 없는 국민은 수신료를 안 낼 권리를 바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TV가 없는데 잘못 고지되어도 바로 알지 못하고 나중에 환불받기가 까다로웠는데, 이제는 수신료가 부과되고 있는지를 바로 알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신료가 미납되어도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미납으로 보지 않게 되고 단전 등의 우려도 없습니다.

Q3 수신료 분리 납부는 어떻게 신청하며, 어떤 방법으로 고지되나요?

한전이 KBS와 협의 등을 거쳐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하여 고지하고 징수하기 위해서는 약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시행일로부터 준비가 완료되기까지의 과도기에는 부득이 고지를 현행과 같이 통합 고지하되, 현재의 전기요금 수납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한전 계약자의 수납방법에 따른 TV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

구분	수납방법	과도기 TV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
자물 납부	자물어쇄 예금계좌, 신용카드	납기 마감 4일전(영업일 기준, 예시 : 납기마감일이 15일인 경우 11일까지)까지 한전 고객센터(☎123)를 통해 신청 ※ TV 수신료의 별도 납부를 지정하는 관련 시스템을 보완이 완료되는 8월초에 SMS로 발송
	지정계좌	12월부터 분리 납부 가능
수출 납부	신용 카드	7월부터 분리 납부 가능
	한전 ON	(한전 고객센터를 통해 납부 시 12월부터 분리 납부 가능)
	은행지출 계좌 가상계좌	납부 방법을 지정하지 또는 한전 고객센터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로 전환

+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이 맺어져 있지 않아 한전의 전기요금 고지서가 아닌 관리비 고지서로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합산 청구되는 집합건물(아파트 등)의 개별세대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에게 TV 수신료와 관리비의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한전은 집합건물 관리주체에게 각 개별세대의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 고지 및 징수하도록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며, 관리주체가 TV 수신료를 별도로 수납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면 아파트 등의 개별세대들도 TV 수신료의 분리 납부가 가능하게 됩니다.

Q4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 주거 유형에 따라 분리 납부 방식이 다른가요?**

TV 수신료 분리 납부 방식은 주거 유형이 아닌 한전과의 직접적인 전기사용계약 여부 및 수납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한전 고지서로 직접 청구받아 납부하는 국민들은 과도기에는 3번 송과 당면메시지와 같이 한전에 납부하는 전기요금 수납방법에 따라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이 맺어져 있지 않아 한전의 전기요금 고지서가 아닌 관리비에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합산 청구되는 집합건물(아파트 등) 개별세대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에게 수신료와 관리비의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하며, 관리주체가 TV 수신료를 별도로 수납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면 아파트 등의 개별세대들도 TV 수신료의 분리 납부가 가능하게 됩니다.

Q5 완전한 분리 징수는 언제부터 가능하며,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나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하여 고지하고 징수하기 위해서는 한전과 KBS가 협의를 거쳐 TV 수신료 고지서를 별도로 제작하여 전달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수납시스템을 보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 기간여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TV 수신료의 완전한 분리 고지와 징수를 위한 준비가 완료되면 국민들은 별도의 TV 수신료 고지서를 받아 납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전은 막 3개월로 예상되는 준비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Q6 6월분 전기요금 고지서(수신료 포함)를 이미 받았는데, 12일 이후 수신료 분리 납부를 신청해서 전기요금, 수신료를 따로 낼 수 있나요?

한전 고지서로 직접 청구받은 국민일 경우, 납기일이 7.12일 이후라면 3번 전화답변에서와 같이 한전에 납부하는 전기요금 수납방법에 따라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기일이 7.15일인 자영업자의 경우 신청기한이 7.11일로서 자동이체 분리 납부 신청이 불가하므로, 신용카드 등 다른 납부 방법으로 전환하여야 분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한전 고지서가 아닌 관리비에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합산 청구되는 집합건물(아파트 등) 개별세대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에게 수신료와 관리비의 분리 납부 가능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Q7 KBS, EBS를 보지 않는데도 수신료를 내야 하나요?

네, 현행 방송법상 TV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은 수신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KBS·EBS를 시청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OTT 등을 많이 이용하는 최근의 미디어 소비 형태를 감안하면 동의하지 못하는 국민들도 있었으나, 현행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는 분리징수 후에도 유지됩니다.

Q8 TV가 있는데 수신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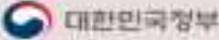
TV를 가지고 있는데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방송법에 따라 미납 수신료의 3% 만큼 가산금액(수신료 2,500원 기준 70원)이 부과됩니다. 또, KBS가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채납에 준하여 강제징행을 할 수 있는데, 방송위는 국민의 편의 증진과 불체료를 고쳐야 할 것이라며 판단할 것입니다.

Q9 외국에서는 수신료를 어떻게 징수하나요?

나라마다 공영방송 재원을 다양한 방식으로 마련하고, 징수방식도 상이한데, 세계적인 공영방송인 영국 BBC, 독일 ARD-ZDF, 일본 NHK의 경우 수신료만을 단독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정홍보 ⑦ [출생통보제 도입]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한덕수 총리, '출생통보제 도입' 관련 국무회의 모두발언 7.11. 

'출생 미등록' 아이가 없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합니다

아이가 온전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태어나 갖는 첫 번째 권리인
'출생 등록'부터 보장돼야 합니다.

이에 부모 뿐 아니라 의료기관과 국가까지
출생 신고를 의무화합니다.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지키고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주요 국정홍보 ⑧ (4개 업종 맞춤형 지원)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관계부처 합동 「제2차 변일자리 해소방안」 발표 712(수) 고용노동부

건설업 *국토부

- ✓ 편의시설 설치기준 마련, 적용-확산
- ✓ 건설기능인등급제 기반 교육학대 인력매칭지원

해운업 *해수부

- ✓ 승선기간 유급휴가일 개선, 외항-원양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
- ✓ 우수외국인 장학생 유치, 외국인력 인권보장 강화

4개 업종 맞춤형 지원

수산업 *해수부

- ✓ '아선원보험' 의무화, 노후 위판장 현대화 지원
- ✓ 외국인력 쿼터 확대 검토, 복지회관 조성

자원순환업 *환경부

- ✓ 폐기물 공공선별장 현대화-자동화 지원
- ✓ 산업계 수요 맞춤형 재직자 교육검화, 고급인력 양성

<기존 6개 업종 추가 과제>

<h4>조선업 <small>*산업부</small></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구제와 등 격차해소 지원 ✓ 외국인력 신속도입 지원 	<h4>부리산업 <small>*산업부</small></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친화형 근로시간 유연화 지원 ✓ '부리명칭센터' 운영, '도약센터' 신설 	<h4>물류·운송업 <small>*국토부</small></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고용업종' 지정기간 연장-지원 ✓ '버스-터미널 지속가능 기반조성 방안' 마련
<h4>보건·복지업 <small>*복지부</small></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 추진 ✓ '저우개선 및 인력수급 방안' 마련 	<h4>음식점업 <small>*농식품부</small></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랜차이즈 창업백방회 연계매칭 지원 ✓ '푸드테크 산업 육성법' 제정 추진 	<h4>농업 <small>*농식품부</small></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류형 영농작업반 확대 ✓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특별법' 시행

OPEN 112

주요 국정홍보 ⑨ [지방시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근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나 그간 추진체계가 분리되어 있어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습니다.

지방분권

지방분권법



자치분권위원회

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법



국가균형발전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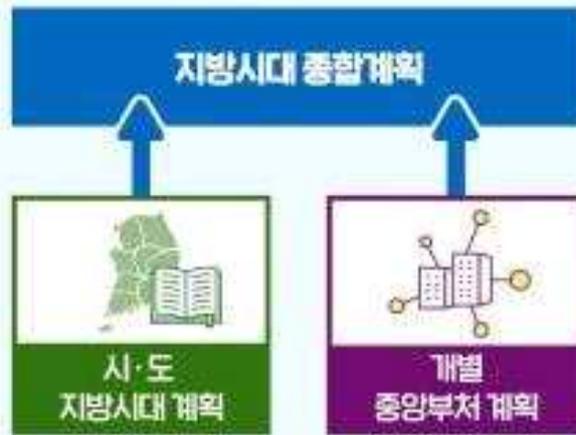
이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3.6.9.) 되었습니다.



1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계획하고,
중앙은 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상황식 계획 수립·시행



2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관련 시책·과제 추진

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근거 시설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을 위해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 과감한 규제 특례·세제 지원



3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컨트롤타워,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조정하는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운영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29.)”

기존 지방자치의 날(10.29.)과 국가균형발전의 날(1.29.)을
통합한 새로운 국가기념일 지정·운영

“지방시대 엑스포”

그동안 따로 개최되어 오던 지방자치박람회와
균형발전박람회를 지방시대엑스포로 통합 개최 예정(10.30.-11.1.)





통합적인 정책 추진으로
국민 누구나 균등한 기회를 갖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지방이 주도하는 균형발전,
이를 통한 지방시대의 구현
행정안전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국정홍보 ⑩ (교권 확립을 위해 최선)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이주호 부총리,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 참석 7.21.



교권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타깝게 돌아가신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교육부는 교육청과 합동조사단을 꾸려
경찰조사와는 별도로 사망하신 교원과 관련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응하겠습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어떠한 경우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되어
균형 잡힌 교육현장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시도교육감님들과 협의하여
학생 인권조례를 재정비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주호

주요 국정홍보 ⑩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반도체

첨단 시스템·메모리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용인·평택 메모리반도체, 시스템반도체

- ☑ 민간투자 562조원(~2042년)
- ☑ 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 수성,
시스템반도체 점유율 10%(현재 3%)로 제고

구미 반도체 소재

- ☑ 민간 투자 4조 7000억원(~2026년)
- ☑ 300mm 웨이퍼 시장 세계 2위 도약(~2026년)

이차전지

전 밸류체인 완결 및 미래 이차전지 수요 대응

청주 배터리 셀

- ☑ 민간투자
4조 2000억원(~2026년)
- ☑ 미래 이차전지
혁신 거점

포항 양극재

- ☑ 민간투자
12조 1000억원(~2027년)
- ☑ 국내 최대 양극재
생산 거점(연 70만톤 이상 생산)

새만금 원료

- ☑ 민간투자
6조 4000억원(~2027년)
- ☑ 핵심광물 가공 및
리사이클링 전초기지

울산 셀, 소재

- ☑ 민간투자
7조 4000억원(~2030년)
- ☑ 이차전지 포트폴리오
다변화 거점

디스플레이

차세대 디스플레이 혁신 거점

천안·아산 차세대 디스플레이

- ☑ 민간투자 17조 2000억원(-2026년)
- ☑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초격차 확보,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생태계 조성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에 지정된 특화단지에
민간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인허가 신속 처리 ▲킬러 규제 혁파
▲세제·예산 지원 ▲용적률 완화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 등을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 국정홍보 ⑫ [실업급여 문제점 개선]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실업급여는 소중히 지켜야 할 핵심 고용안전망입니다

폐지? 훼손? NO!

지속가능하도록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Q.1 왜 개선해야 하는 건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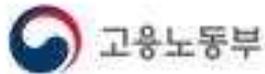
- ① 실직시 생계 보장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실업급여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 ② 지금은 일할 때 소득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상황이
일부 발생하고 있어,
지나친 반복이나 부정수급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Q.2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 ①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 지원 강화
- ②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감독
- ③ 지급요건·수준 등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

**노사가 납부한 보험료가
실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제대로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제도를
지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경청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주요 국정홍보 ㉞ [사형집행 시효 폐지 국회 통과]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사형 집행 시효 폐지 및 영아살해죄 폐지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오늘(7. 18.) 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국회에서 정부안을 비롯하여 관련 의원발의 개정안이 함께 논의되어 대안 통과



사형의 집행 시효 폐지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소위 '집행 시효')하고 있을 뿐,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이하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의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사형확정자의 수용은
사형집행 절차의 일부로 집행 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지만,
법률에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2023년 6월 12일 정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은 사람을 살해하여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의 시효 제도와 공소시효 제도 간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도 있습니다.**



영아살해·영아유기죄 폐지

현행 「형법」은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여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한 경우,
일반 살인죄나 유기죄보다 감경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위 ‘그림자 아이’ 문제와 같이 영아가 태어나고도
출생신고조차 되지 못한 채 사라지는 등
영아의 생명권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드러나고,
영아를 살해하는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음에도
영아살해죄는 '53. 제정 당시 도입된 이래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 규정들을 폐지하여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에도
일반 살인·유기죄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저항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한 **사회적 약자인 영아의 생명권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 법률 중 사형 집행 시효 폐지 관련 조항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 폐지 관련 조항은
형이 가중되는 측면을 고려하여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사형의 집행 시효 폐지의 경우, 부칙으로 개정규정 시행 전에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고
영아의 생명보호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고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해소하는 **법·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국정홍보 ㉞ [스토킹방지법 무엇이 달라지나요?]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을 확대합니다!

☑ 피해 발생 단계부터 보호하며,
주거, 상담, 치료회복 프로그램, 법률 구조 등 지원



☑ 취업 등 자립 지원, 취학 지원 등



☑ 피해신고자의 해고 등 불이익 조치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수사기관·스토킹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대상
스토킹 예방교육 실시



* 수사기관 사건담당자 예방교육 의무화

직접적인 스토킹 피해 당사자 외에 피해자 가족도 보호합니다!

피해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도 보호하며,
특히 주소지 외 지역에서 취학이 필요한 가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 상담-신고 연계를 강화합니다!



주요 국정홍보 ⑯(호우피해 지원 대책 늘린다)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주택 전파 피해 지원금**위로금을 더해
최대 1억 2800만 원까지
주택 복구 비용 지급**

풍수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분께는
보험가입자의 80~90% 수준으로
피해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주택 전파 피해 지원금(최대)>

*반파는 전파의 50% 지급

(단위 : 만원)

구분	풍수해 보험 가입자 피해 지원금 (추정보험금+위로금)	풍수해 보험 미가입자 (종전)
66m ² 미만	5,600 (4,500+1,100)	5,100 (2,000)
66~82m ² 미만	7,400 (5,900+1,500)	5,900 (2,400)
82~98m ² 미만	9,200 (7,300+1,900)	7,400 (2,800)
98~114m ² 미만	11,000 (8,800+2,200)	8,800 (3,200)
114m ² 이상	12,800 (10,200+2,600)	10,300 (3,600)

침수 주택 피해 지원금

기존 300만 원에서 2배 인상
세대 당 600만 원 지급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피해 지원금 700만 원 +
사·도 재해구호기금 200만 원
총 900만 원 지급

사망·실종 위로금

**장제비가 포함된 소정의
금액 지급**

농작물·농기계 피해 지원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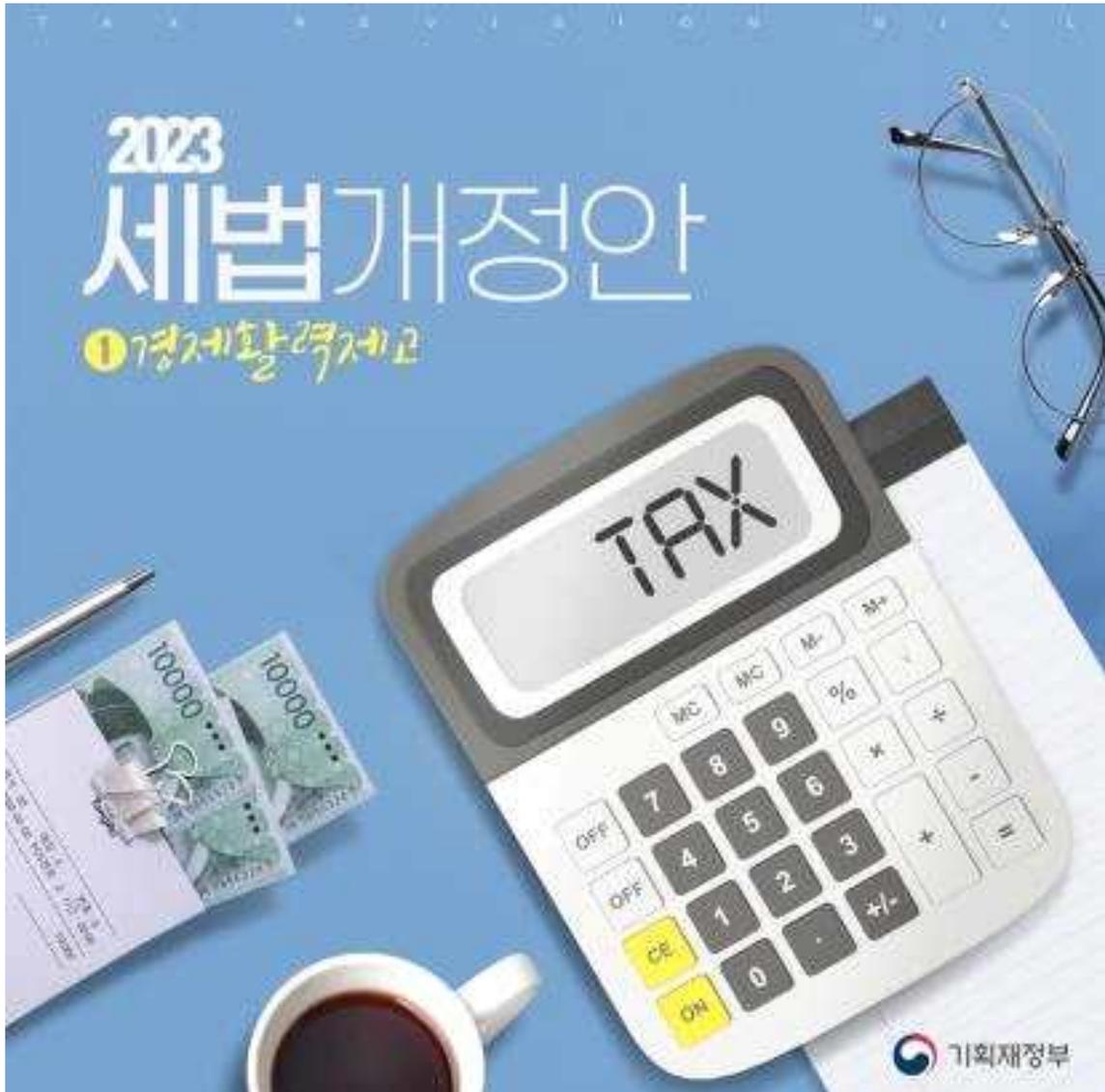
**농기계·설비 피해도 신규 지원,
피해 규모 집계 후 지원안 확정**

주택 전파 피해지원금과 소상공인 피해지원금부터 금주 중 지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민 피해 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난피해 지원제도를 보완해나가겠습니다.**

주요 국정홍보 ㉞(2023 세법개정안)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K-콘텐츠산업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상향



<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유도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리쇼어링)

•소득세·법인세 감면 폭 및 기간(7→10년) 확대

현행	개정안
5년 100% + 2년 50%	7년 100% + 3년 50% 감면

•세제지원 업종요건 유연화

- 「해외진출기업복귀법」상 전문위원회의 업종 유사성 확인 시에도 인정

→ 해외진출기업의 사업구조 전환을 수반한 리쇼어링 촉진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 상향**
(60억원 이하 → 300억원 이하)
- **연부연납 기간 대폭 확대** (5년 → 20년)



가업승계 업종변경
허용범위도
확대 됩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	
	증여재산가액(억원)	세율(%)	증여재산가액(억원)	세율(%)
증여세 저율과세구간 상향	0~10 이하	0(기본공제)	0~10 이하	0(기본공제)
	10~60 이하	10	10~60 이하	10
	60~300 이하	20	60~300 이하	20
	300~600 이하		300~600 이하	
연부연납 기간 확대	5년		20년	
사후관리기간 업종변경 완화	종분류 내 변경 허용		대분류 내 변경 허용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한도 확대



- 선원인력 확충 및 해외건설수주 지원을 위해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 확대



월 300

▶ **500**만원

2023

세법개정안-경제활력제고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투자고용 촉진, 기업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민생경제 회복으로 기대해주세요

주요 국정홍보 ① [유엔군 참전의날, 정전 70주년]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대한민국공군

〈국군전사자 유해복환〉

**이곳이 당신이 피로 지킨
대한민국입니다.**

마지막 한 분까지
모셔오겠습니다.

 대통령실



주요 국정홍보 ㉞(교권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대통령 지시(2023.7.24.)



교권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

- 1 생활지도 고시 등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2 당과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조속히 개정
- 3 학부모-교원 간의 합리적인 소통 기준 마련 및 관계 개선

**선생님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교육TV에서 확인하세요!



주요 국정홍보 ㉞[생계급여 지원기준액 인상]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The infographic is presented as a red spiral-bound notebook. The top left corner features the logo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Korea). The top right corner is labeled '2024. 3. 28. 개시'. A yellow banner at the top reads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변경'. The main text, in large white and yellow font, states: '생계급여 지원기준액 역대 최고 13.16% 인상, 기준 중위소득 6.09% 상향!'. A red tag on the right side says '4인 가구 기준!'. Below the text is an illustration of a diverse group of people (a man with glasses, a woman, a man in a brown coat, a woman in a blue coat, a woman in a pink top, and a man with a beard) looking at a tablet. Two gold coins are shown floating around them. The bottom right corner of the notebook page is marked '1/8'.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이렇게 변경됩니다!



[2023년도 및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천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3년	207만7,892	345만6,155	443만4,816	540만964	633만688	722만7,981
	'24년	222만8,445	368만2,609	471만4,657	572만9,913	669만5,735	761만8,369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 보장제도 및 각종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입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완화하고 최저보장수준은 높여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합니다.

< 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 32% 이하 가구

주거급여



중위소득

47% → 48% 이하 가구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 조정!**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

4인 가구 기준



1인 가구 기준



* 각 가구별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도 분배액에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 최저 보장 수준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 본인부담금에 고액 또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 할때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약국에서 본인부담금의 급여비(총액의 2%)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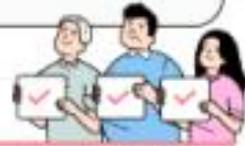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비율	금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주거급여 최저 보장 수준

임차급여 기준 임대료를 2023년 대비 최대 2.7만원(8.7%) 인상

[2024년 임차 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만 원/월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별시		4급지 그외 지역	
1인	34.1	+1.1	26.8	+1.3	21.6	+1.3	17.8	+1.4
2인	38.2	+1.2	30.0	+1.5	24.0	+1.4	20.1	+1.6
3인	45.5	+1.4	35.8	+1.7	28.7	+1.7	23.9	+1.9
4인	52.7	+1.7	41.4	+2.0	33.3	+2.0	27.8	+2.2
5인	54.5	+1.7	42.8	+2.1	34.4	+2.1	28.7	+2.3
6인	64.6	+2.0	50.7	+2.5	40.8	+2.4	34.0	+2.7

※ 가구원 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교육급여 최저 보장 수준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 무상교육 제와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용 실비로 지원



주요 국정홍보 ㉔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발표]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에 대한 획기적 지원대책 마련
-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발표(7.27.)-

1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지원 강화

다둥이 임신의 경우
**태아당 100만 원씩
증액 지원합니다!**



태아 수	지금	앞으로는
 1명	100만 원	100만 원
 2명		200만 원
 3명	140만 원	300만 원
 4명+		400만 원

태아당 100만 원씩 증액 지원

태아 수에 따른 의료비 실지출 등을 감안하여
다둥이 가정의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지원이 확대됩니다.



임산·출산중 허탈하는 부부에 대한 획기적 지원대책 마련
-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발표(7.27.)-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기간 확대

다둥이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이
앞당겨집니다!**



태아 수	지금은	앞으로는
 1자녀	임금감소 없음, 1일 2시간 이내	임금감소 없음, 1일 2시간 이내
 2자녀	3개월 이내/ 9개월 이후	3개월 이내/ 8개월 이후
 (3자녀 이상)		3개월 이내/ 7개월 이후

조산 위험이 큰 다둥이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임신 8개월부터 가능해집니다.
[세쌍둥이 이상 임산부는 임신 7개월부터 사용 검토]

임산·출산물 지원대상은 모두에 관한 정기적 지원대책 마련
-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발표(7.27)-

3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다둥이 출산가정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15일로 늘어납니다!



출생아 수	지금은	앞으로는
 (1아동)	일괄 10일	10일
 (2아동)		15일

다둥이 출산 임신부의 충분한 회복과 돌봄 지원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로 확대합니다. (주말 포함 시 최대 20일)
또한,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용한
직원의 급여 고용보험 지원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합니다.

임산·출산율 향상을 위한 부부애 (매한) 패키지 지원대책 마련
-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발표(7.27.)-

4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확대

세쌍둥이 이상 가정은
**도우미 지원인력·
기간이 늘어납니다!**



지금		앞으로는	
지원인력	지원기간	지원인력	지원기간
2명	15~25일	태아 수에 맞춰 증원 <small>*세쌍둥이 3명 내외(도우미 4명)</small>	세쌍둥이 이상 지원일수 확대 15~40일

지원인원 2명 유지 시 수당 인상 지원

* 신생아 3명 : 지원인력 3명, (첫째미 5~15일, 둘째미 이상 10~20일 지원)

** 신생아 2명 : 지원인력 2명, 10~20일 지원

*** 지자체 예산 상황 등에 따라 지원인력·기간 등 조정 가능 (지방비영사팀 고려)

특별 난이도가 높은 세쌍둥이 이상 가정은
2024년부터 최대 40일까지 도우미 지원 기간이 확대됩니다.
(도우미 2명만 지원하는 경우, 약 25% 수당 인상)

주요 국정홍보 ㉔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방향]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한민국 우주항공을 이끌어갈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를 공개합니다

전문가가 우주항공 정책을 수립하고, 연구개발·산업육성·국제협력을 주도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방향」 발표 7.27.

美 NASA를 모델로 우주항공 전담조직을 만들겠습니다.

- ⊙ '정책·연구개발 + 산업육성, 국제협력' 전담
- ⊙ 국가우주위원회 사무국으로서 우주항공 컨트롤타워
- ⊙ 전문적이고 유연한 네트워크형 운영체계 구축

우주항공 거버넌스(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부 등

관계기관의 기능을 이관하여 체계적인 조직을 구성하겠습니다.

- ① 임무조직 | 정책, 연구개발, 비즈니스, 국제협력
 - ② 운영조직 | 인사, 감사, 홍보 등 행정 지원 업무
- * 국가위성 운영, 우주환경 감시, 국가위성항법 등은 소속기관 설립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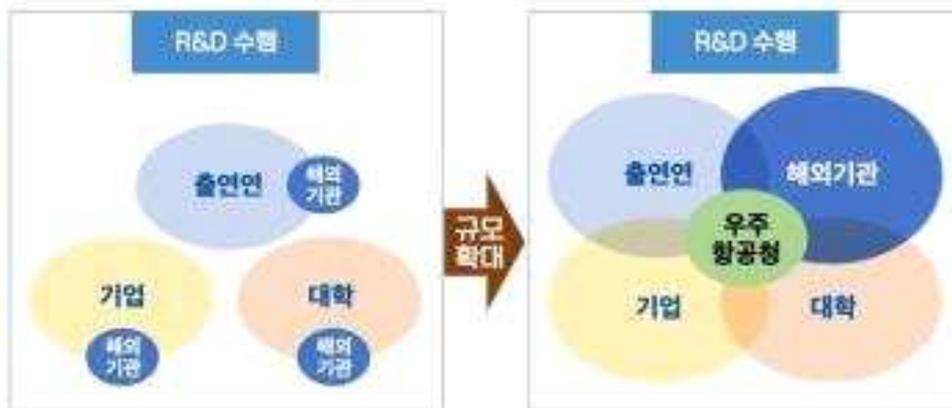
업무 조직(안)



선도적 기술혁신을 이끌고, 산·학·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① 우주항공청 | 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대형 사업 설계, 공동 연구개발
- ② 산·학·연 | 기관별 고유영역 사업(우주항공청 관리·지원)

R&D 수행(안)



우주항공청 개청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우주항공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특별법」 국회 제출(23.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요 국정홍보 ㉔ [민간아파트 안전점검 방안 발표]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국토교통부, 민간 아파트 안전점검 방안 발표 8.3.



국토교통부

기둥과 천장으로 된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 전수조사에 즉시 착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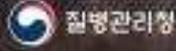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민간아파트 293곳을 점검합니다.

조사대상	시공 중 105곳, '17년 이후 준공 188곳
점검 범위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 주거동
후속 조치	하자 발견 시 시공사가 보수·보강 실시 법령위반 설계·시공·감리자는 엄중 처벌
재발 방지	안전대책 등 10월 중 발표

국민 안전 최우선을 원칙으로 안전 불감증을 뿌리 뽑겠습니다.

주요 국정홍보 ㉞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 방역 대응]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2023.8.2. 

**정부는 6가지 대응원칙으로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현재의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코로나19를 4급감염병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이행해 가겠습니다.**

- 코로나19 중증자(고위험군) 대비 대응방안 2023.8.2.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 대비 방역 대응 방안

- 1 실내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일상방역수칙이 생활 속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등 다수가 밀집한 공간에서 다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
 - 코로나19 확진자는 가족과 이웃, 동료 보호를 위해 5일 격리 권고 적극적인 준수 당부
- 2 지자체 감염취약시설 전담대응팀을 통해 감염취약시설의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밀착 관리하고, 집단발생 대비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 3 병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확진자 증가에 따른 병상가용률 지속 모니터링, 확진자 급증에 예상되는 경우 추가 지정 등
- 4 고위험군의 중증화률 예방하기 위해 먹는 치료제 처방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먹는 치료제 처방현황 지속 모니터링 점검
- 5 진단·검사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현재 고위험군은 선별진료소에서 무료 PCR 검사, 일반인은 호흡기합자진료센터에서 신속항원검사 가능
 - *유상이 없는 경우 역학 검사 권고
- 6 동점기 대비 XBB 기반 백신 신속 도입으로 10월경 접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주요 국정홍보 ❷ [독립운동 최재형 선생, 부인과 재회]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국립묘지법 개정안 시행 (2023.07.18.)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순국선열의 영정 또는 위패와
배우자의 유골을
묘에 합장할 수 있도록 함



러시아 우수리스크에 세워진 최재형 기념비

국립묘지법 개정안 시행으로 최재형 선생이
순국 100여년만에 부인 최 엘레나 여사와 재회합니다.
아직 찾지 못한 최재형 선생의 유해는
순국 추정지인 러시아 우수리스크의 흙으로 대신하고,
키르기스스탄 묘지에 안장된 부인 최 엘레나 페트로브나 여사의 유해를
국내로 모셔와 합장하는 것입니다.

연래주 대부 최재형 선생
대한민ちに 안장되기까지의 과정

1970.10. 가짜 후손 최규흠, 원호처에 故 최재형 선생 이장 신청

1970.11. 국립서울현충원 이장 (애국지사 묘역 108번에 가묘 조성)

1990. 후손 최 엘리자베타(7녀), 최규흠이 가짜 후손이라고 주장

2009.1. 故 최규흠의 자녀 최하옥, 故 최재형의 유족이 아님을 확인

2009.3.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원의 이장

2014.12. 후손 최발렌틴(손자), 故 최재형의 부부 위패 신청

2023.07.18. 국립묘지법 개정안 시행으로 부부 합장 가능해짐



실시간 기부 현황

기부 목표 금액: 60,000,000원

55%

※ LG유플러스는 제78주년 광복절 계기 <문화로 독립을 외치다> 전시 캠페인을 통한 적립금을 이번 유해 봉환 사업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문화로 독립을 외치다>
당연하지 않은 것들 제 1장

LGU+ X

LG유플러스는 제78주년 광복절 계기 <문화로 독립을 외치다> 전시 캠페인을 통한 적립금을 이번 유해 봉환 사업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최 엘레나 여사의 유해 봉환 과정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키르기스스탄에 방문한 경우택 국회의장의 협조 요청,
주키르기즈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의 도움,
기념사업회의 대국민 모금운동과 LG유플러스의 후원 등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국가보훈부

최재형 선생, 최 엘레나 여사
우리봉환 및 합장식 일정

8.7.월요일.

최 엘레나 여사 유해 봉환

8.11.금요일.

러시아 우수리스크에서 채취한 흙 국내 반입

8.12.-13. 토-일.

국립서울현충원 국민추모공간 운영

8.14. 월요일.

<백년만의 해후, 꿈에 그리던 조국 대한민국>
부부 합장식 거행

최재형 선생, 최 엘레나 여사 부부의 합장식은
광복절 하루 전인 8월 14일 월요일에 열립니다.

그에 앞서 주말 양일간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
국민추모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추모·참배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